

의안번호	2215245
의 퇴 인	이성권의원
회 답 일	2026.1.8.
추계번호	25D689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디지털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디지털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2	안 제9조(디지털자산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디지털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디지털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투명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거래 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국제적 동향과 국제적 공조·규제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8. 디지털자산의 기술적·산업적 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 9. 디지털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디지털자산산업 발전과 건전한 디지털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의무규정
3	안 제11조(실태조사)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디지털 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12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산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재량규정
5	안 제16조(디지털자산 산업발전기금)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 및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 자산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함(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정부의 출연금 및 용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의무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6조(디지털자산 산업발전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제3항) 1. 디지털자산 관련 청년창업 지원 사업 2. 디지털자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3. 디지털자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4. 디지털자산산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5.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 6.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적 공조 및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7. 디지털자산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의무규정
6	안 제17조(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디지털자산 관련 기술 및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1.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공급 계획 3.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 촉진 4. 전문교육기관 확충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디지털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미대상: 현행법 제5조와 동일한 조문
2	안 제9조(디지털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추계 【참고자료】
3	안 제11조(실태조사)	
4	안 제12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16조(디지털자산산업발전기금)	
6	안 제17조(전문인력 양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 및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 자산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6조, 제17조)
 - 안 제16조제2항¹⁾에 따르면,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품으로 구성함
 - 또한, 제3항 및 제4항²⁾에 따르면, 기금은 디지털자산 관련 청년창업 지원, 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이용자 보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에 사용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기금의 설치·운용(안 제16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2조), 전문인력 양성(안 제17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재원 조달의 방식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필요함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다만, 디지털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9조)과 실태조사(안 제11조)의 추가재정소요는 【참고자료】와 같음

1) 제16조(디지털자산산업발전기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제16조(디지털자산산업발전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디지털자산 관련 청년창업 지원 사업
2. 디지털자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3. 디지털자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4. 디지털자산산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5.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
6.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적 공조 및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7. 디지털자산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④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

[참고자료]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9조) 및 실태조사(안 제11조)의 추가재정소요

1. 추계의 전제

-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과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평가 비용은 유사사업인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분석”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3] 중앙부처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현황

구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연구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데이터 경제 기반 정책 연구
목적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 수립에 필요한 선행연구 추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환경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결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언
발주기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구기관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고원대학교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기간	‘22.10.~’23.3.	‘22.2.~’22.11.	‘18.10.~’18.12.
연구용역비 (예산 기준)	40,000,000원	47,000,000원	30,000,000원

자료: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https://www.prism.go.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디지털자산 실태조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유사 실태조사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함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8조³⁾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지능정보화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에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 AI산업육성(2602-301)의 내역사업으로 “인공지능 산업 실태조사”에 2억원이 편성됨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수립·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세 추계내역

가.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안 제9조)

- 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실시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연구’ 용역 사례를 참고함. 용역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함
 - 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연구 용역비: 40백만원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3년 주기로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4]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 수립(기초연구)	40	-	-	40	-	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디지털자산 실태조사(안 제11조)

- 디지털자산 실태조사의 추가재정소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는 영업활동 실태 외에도 산업 경쟁도 평가,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⁴⁾
 - 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유사성을 가진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인공지능 산업 실태조사”가 있는데, 동 사업의 2025년 기준 예산은 2억원임
- (추계결과) 추계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실태조사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4) 제18조(디지털자산 실태조사) 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영업활동 실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현황
2. 디지털자산업자의 영업활동
3.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환불준비금 현황
4. 디지털자산산업의 경쟁도 평가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 5] 디지털자산 실태조사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실태조사	200	200	200	200	200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